

의안번호	2219825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6. 9. 23.
추 계 번호	26B349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22조의4제3항)	90	-	-	-	-	90	18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4(건설기술인의 노무비계상 등) 신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22조의 4(건설기술인 의 노무비계상 등) 신설	건설기술인의 노 무비 별도 계상 (제1항·제2항)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¹⁾의 노무비를 별도로 계상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²⁾ 및 조달청의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음 ※ [참고자료]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공공공사의 공사비에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상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의 기준금액, 반영비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현행 전체 공공공사의 공사비에서 건설기술인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부재하므로,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제3항)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2조의4제3항)
-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의 평균 비용을 참조하여 추계함
 -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유사사례의 내용

(단위: 백만원)

실시 기관	연구용역명	실시년도	예산
국토교통부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	2026	80
	건설사업관리 대가 및 감독자 배치 기준 개선 연구	2026	100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대가 산정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2024	100
평 균			90

자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 (추계 결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90	—	—	—	—	90	18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조달청)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율)	
		토목	건축
1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1	17.5
	7~12개월 (365일)	19.5	17.9
	13~36개월 (1095일)	19.8	18.2
	36개월 초과 (1096일)	21.0	19.4
10억 - 5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8.9	17.4
	7~12개월 (365일)	19.3	17.8
	13~36개월 (1095일)	19.6	18.1
	36개월 초과 (1096일)	20.8	19.2
50억 - 3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0	17.5
	7~12개월 (365일)	19.4	17.9
	13~36개월 (1095일)	19.7	18.2
	36개월 초과 (1096일)	20.9	19.4
300억 - 1,000억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9.1	17.5
	7~12개월 (365일)	19.5	17.9
	13~36개월 (1095일)	19.8	18.2
	36개월 초과 (1096일)	21.0	19.4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8.9	17.4
	7~12개월 (365일)	19.3	17.8
	13~36개월 (1095일)	19.6	18.1
	36개월 초과 (1096일)	20.8	19.3

자료: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26.4.7. 공지, 2026.4.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